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,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마련(법률 제20279호, 2024. 2. 13. 개정, 2024. 8. 14. 시행)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(제8조의3제2항)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·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관할”을 “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”로,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”을 “신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,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)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(이하 “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u>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,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</u>	제8조의3(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·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	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

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일 것

2. 거동이 불편하는 등의 사유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할 것

3.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

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소득·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,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----- 신청

-----.

-----.